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하향 조정(안 제6조의7제2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중·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선불 교통카드는 사전에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잔액 부족 시 탑승할 수 없는 불편이 있는 바, 이러한 불편이 없는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*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

* 월 30만원 한도 내 신용결제 가능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만 12세~17세의 중·고등학생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카드 사용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

마. 관련법규

<여신전문금융업법>

제14조(신용카드·직불카드의 발급) ①~② (생략)

-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 (1호 생략)

2.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

2.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발생시 당연퇴직 예외사유(안 제9조의1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부가통신업자(행사)의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한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개정안*('18.12.11. 개정, '19.6.12.시행예정)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퇴직 예외사유를 규정

* 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개별 금융업법의 임원 결격사유규정 삭제 시 종전 여전법상 여전사 및 행사 임원 관련 규정도 삭제됨

- ➔ 행사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의 규율을 받지 못해 법령상 공백상태 발생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된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연퇴직되거나 직무정지, 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입법공백을 해소하여 부가통신업자의 결격요건 해당 임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·감독이 가능해짐

마. 관련법규

<여신전문금융업법>

제27조의2(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) ①~⑤ (생략)

- ⑥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(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그 직(職)을 잃는다.

3. 부가통신업자 임원 선임·해임 시 금융위 보고방식(안 제19조의20제1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정과정에서 삭제된 규정을 복원하여 종전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해당조문과 동일하게 규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부가통신업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입법공백을 해소하여 부가통신업자 임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·감독이 가능해짐

마. 관련법규

<여신전문금융업법>

제27조의2(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) ①~⑥ (생략)

- ⑦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4.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(안 제19조의2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차주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이 개정('18.12.11. 개정, '19.6.12.시행예정)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

※ 현재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여신거래 약관에 규정되어 운영 중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
 - (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) 취업, 승진, 재산증가, 신용등급 상승 등
 - (개인이 아닌 자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) 신용등급 상승, 재무상태 개선 등
- 금리인하요구·처리절차
 - 금리인하요구시 10영업일이내 수용 여부 및 사유 안내 (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하요구권 행사의 활성화와 효율적 처리가 가능

마. 관련법규

<여신전문금융업법>

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 ①~② (생략)

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5.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(안 제23조의3제1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임·해임시 금융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동 보고의 접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함으로써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원 선임 및 해임 보고 접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임원 선임 및 해임 보고 접수 업무를 금감원장에 위탁하여 여전사 및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

마. 관련법규

<여신전문금융업법>

제69조의2(권한의 위탁)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6.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(안 제26조 및 [별표4]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개정('18.12.11.~'19.6.12.)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및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구체화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

마. 관련법규

<여신전문금융업법>

제72조(과태료) ①~② (생략)

③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④(생략)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